

공 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(통·반 위촉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(통장 위촉)의 규정에 의거, 통장공개모집에 따른 위촉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직 위	성 명	성별	위촉일	비고
30통장	최*현	남	2018.05.07.	재위촉

2018. 05. 04.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장

